

서울특별시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204
----------	-----

제출년월일 : 2022년 8월 29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가. 서울특별시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는 장애인의 취업기회 확대를 위해 취업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취업상담 및 알선, 일자리 개발, 현장훈련, 사후지도 등의 취업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일자리 확대에 기여하는 사업이며, 우리 시가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중심기업협회에 위탁하여 운영중이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나. 다양한 고용 관련 서비스 제공으로 장애인의 자립기반 확립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현장 경험을 축적한 법인 등에 이 센터 운영을 계속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센터명 : 서울특별시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나. 센터개요

- 위치 : 서울시 강남구 도곡로 416(대치동)
- 규모 : 연면적 247㎡(서울시립장애인행복플러스센터 3~4층)

다. 운영인력 : 23명(센터장 1, 사무국장1, 팀장 4, 일반직원 17)

라. 위탁기간 : 2023. 1. 1.~2025. 12. 31(3년)

마. 위탁사무

- (장애인취업지원통합사업) 일자리교육, 일자리지원, 일자리연계 사업 등
 - (장애인취업지원특화사업) 맞춤형 일자리 인큐베이팅 및 시범사업 개발 등
 - (시설관리) 「서울시장에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및 「서울시립장애인행복플러스센터」
 - (기타사업) 서울시 계획 및 서울시와 센터 간 협의를 통해 추진하는 사업
- ※ '13.8.7 준공된 행복플러스센터(연면적 1,669.48㎡) 건물관리 위탁 포함

바. 민간위탁의 필요성

- 장애인 구인구직 활성화를 위해 장애특성 맞춤형 취업상담·알선, 구인업체 발굴, 사례관리 등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현장 경험을 축적해 온 전문 기관에 위탁 운영케 함이 보다 체계적이고도 효과적인 장애인 고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사. 소요예산 : 1,896백만원(2022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조 제2항(장애인 고용촉진 추진)
- 서울특별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제3조 제3항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6조

나. 예산조치 : 2023년 예산편성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작성자 : 장애인자립정책과 장애인일자리팀 박주연(☎ 2133-7965)